

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입법 예고

「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8. 25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

1. 조례명: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‘간사’와 위원장 다음가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‘부위원장’은 그 의미가 달라 간사와 부위원장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동군의회

위원회에서의 ‘간사’를 실제 역할에 부합하는 ‘부위원장’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1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조례 제 호

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간사는”을 각각 “부위원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<u>간사</u>) 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명을 둔다.	제11조(<u>부위원장</u>) ① ----- <u>부위원</u> <u>장</u> -----.
② <u>간사</u> 는 위원회에서 호선(互 選)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.	②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 --.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는 <u>간사</u> 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 리하며, 위원장 및 <u>간사</u> 가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한다.	③ ----- --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 ----- ----- -----.